

행정 명령

주 전체 언어 액세스 정책

250만명의 뉴욕인들이 제한된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영어가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니어서 영어를 읽고, 말하고, 쓰고, 또는 이해하는데에 제한이 있다는 뜻이며, 이로 인해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에 잠재적인 장벽이 있으므로; 그리고

모든 뉴욕 주민들의 공공 안전, 보건, 경제적 번영, 및 일반복지는 주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언어 액세스의 증가로 인해 더 나아가게 됨으로; 그리고

뉴욕주는 비용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의 언어 액세스 서비스 시행을 보장하기로 약속하므로;

이제, 그러므로, 나,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, 헌법 및 뉴욕주 법에 따라 내게 확립된 권한에 의해, 다음의 사항을 명령합니다:

1. 직접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적 주 기관들은 중요한 문서를 번역해야 합니다. 여기에는 필수적인 공공 문서, 즉 프로그램 혜택자 또는 참가자가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나 그에게 제공된 지침서 등이 포함됩니다. 번역은 미국 인구조사 자료에 근거하여, 그러한 각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관된, 뉴욕주의 제한된 영어 능력실력을 가진 이들이 사용하는 영어 아닌 여섯 종류의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되어야 합니다. 번역은 이 명령의 서명 이후 늦어도 365일까지는 수시로 되어야 합니다.
2. 그러한 각 기관은 기관과 자신의 주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서비스나 혜택에 대하여 통역해 줄 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
3. 그러한 각 기관은 어떻게 기관이 이 명령에 순응할지를 반영하는 언어 액세스 계획 및 마지막으로 제출한 언어 액세스 계획 이후의 모든 진전에 대해 발표해야 합니다. 이와 같은 계획은 이 명령의 서명 이후 90일 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.
4. 각 언어 액세스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:
 - a.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기관이 언어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게 할 것인지;
 - b. 모든 가능한 번역된 문서의 제목과 어떤 언어들로 번역되었는지;
 - c. 기관의 공공 연락처 번호와 공공 연락처 직위의 이중언어 직원 번호,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;

- d. 최소한, 기관의 연간 언어 액세스 정책 및 어떻게 언어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포함하는 기관의 직원을 위한 훈련계획;
 - e. 이 명령에 대한 기관의 순응을 연간 내부 감독할 계획;
 - f. 제공되는 언어 도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기관이 어떻게 통보하려고 시도하는지에 대한 계획; 그리고
 - g. 공개적으로 알려질 기관 내 언어 액세스 코디네이터.
5. 이와 같은 각 기관의 언어 액세스 코디네이터는 언어 도움 서비스의 조달, 번역된 문서들의 입수가능성, 안내문이 제대로 게시되었는지, 그리고 그 외의 연관된 기준으로 매년 자료를 모아서 기관이 이 명령에 순응하는지를 감독할 것입니다.
 6. 시민권리 (Civil Rights) 차장은 이 명령을 시행하는 기관들에게 지침을 감독, 조정 및 제공할 것이며 기관들에 의해 조달되는 서비스가 번역 및 통역 용납기준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실히 할 것입니다.

이천십일년 시월 육일 Albany시에서 내게 주어진

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함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실장